

# 2024년 김해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고

혼인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입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되는 신혼부부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3일

김 해 시 장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2024년 김해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나. 사업비: 30백만원  
다. 사업량: 6가구 정도  
라. 지원내용: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  
마. 사업기간: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날부터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 2.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나. 대상주택: 혼인 이후 처음 구입한 주택(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 원 이하)  
- 주택매입일 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로 함  
-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며, 리모델링 공사 이후 입주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전 전입관련 서류 제출하여야 함  
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

### 3. 지원제외 대상

-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 다. 지원사업 신청 전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한 경우
- 라.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업체와 계약한 경우
- 마. 무허가 또는 위반건축물인 경우
- 바. 김해시 내 유사사업으로 해당주택에 집수리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 사.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아. 지원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규칙의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 차. 그 밖에 신희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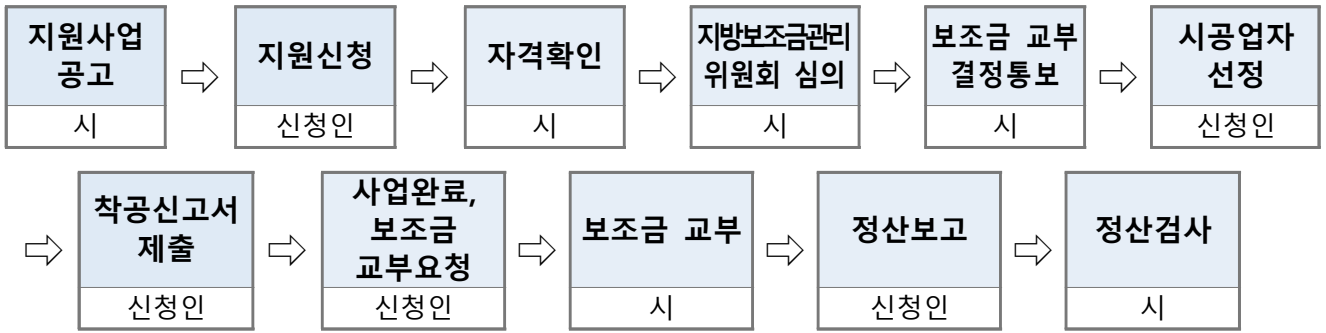
### 4.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가.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최대 50%, 최대 5백만원 지원
  - **자부담비율 50% 이상**
- 나.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
- 다. 보조금은 리모델링 목적 외 사용 금지
- 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이후 리모델링 착수 원칙**
  - 예외사항: 보조금 교부 대상자 선정 전이라도 사업 신청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경우 보조금 교부 대상자로 선정될 시 지원 가능. 단, 선공사가 불가피한 사유 소명자료 제출
- 마.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를 지급하되, **최대 5백만원 지원**
  - ※ (예시1) 리모델링 공사 비용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리모델링 공사비용 800만원 :  $800\text{만원} \times 0.5(50\%) = 400\text{만원}$
  - ※ (예시2) 리모델링 공사 비용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리모델링 공사비용 2,000만원 :  $2,000\text{만원} \times 0.5(50\%) = 1,000\text{만원} \Rightarrow 500\text{만원}$

### 5. 접수방법

- 가. 접수기간 : 2024. 4. 29.(월) ~ 5. 20.(월) 09:00 ~ 18:00
- 나. 접수장소 : 김해시 공동주택과(행복민원청사 5층)
- 다. 접수방법 : 공동주택과에 방문접수
- 라. 지급일 : **공사 완료 후**
  - \* 선금급의 경우 자부담 비용 활용

마. 지원절차



6. 대상자 선정 방법 및 결과 통보

- 김해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김해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세부 시행지침」 심사표(별표1)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선순위 대상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예산 확보 시 후순위 지원 실시
- 심의결과는 신청자 개별 통지( '24년 7월중) 및 김해시 누리집(공동주택과 자료실)에 공개함

7. 리모델링 사업수행자 선정 방법

- 보조금교부 신청자가 리모델링 사업수행자와 직접 계약 체결
-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해당공사 수행 가능한 자와 계약 체결

8.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여야 함.

	제 출 서 류	발 행 처
①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신청인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인 작성 *별지 제 3호 서식
④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신청인
⑤	견적서(내역서 포함) 사본	신청인 작성 *별지 제 4호 서식
⑥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자부담비용 확인 서류 함께 제출)	신청인
⑦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신청인 작성 *별지 제 5호 서식
⑧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정부24)

	제 출 서 류	발 행 처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정부24)
⑩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확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대법원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
⑪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 확인) - 신청자,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⑫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소유주택 및 1주택 여부 확인)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 혼인신고일 이후~현재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정과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 2023년 세전 기준 (2023년 발급 불가 시 2022년)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근무처
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발급가능)
⑮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견적업체
⑯	신청인/견적업체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온라인(정부24)
해당 시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보조금 대상자 선정 전 리모델링 선 수행 시	신청인 작성 *별지 제15호 서식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9. 기타 유의사항

- 가. 건축인허가(신고), 행위허가(신고)를 요하는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시행하며, 절차이행 등에 따른 제반비용은 자부담
- 나. 보조금 교부 신청 후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공사 착수할 수 있으나 선정여부와는 관련 없음
- 다.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 보완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
- 라. 구비서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사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명확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마.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사업자 선정과정 및 공사범위 증가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최초 결정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며, 공사비용이 감소할 경우 지원 결정금액은 최종 공사비의 50%로 조정 지급됨

- 바. 교부결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 미착수하는 경우 교부결정 취소될 수 있음
- 사. 신청인은 사전심사 및 정산확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아.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자.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0. 기타문의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5)

[별표 1]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대상 심사표

구분	평가지표	배점
<b>총 계</b>		<b>100</b>
<b>정량 평가 (70점)</b>	<b>주택 노후도 (20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주택</li> <li>■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li> <li>■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주택</li> <li>■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li> </ul>	20 15 10 5
	<b>주택규모 (10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40㎡이하</li> <li>■ 전용면적 40㎡초과~60㎡이하</li> <li>■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li> <li>■ 전용면적 85㎡초과</li> </ul>	10 7 5 2
	<b>자녀수 (20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명 이상</li> <li>■ 2명</li> <li>■ 1명</li> <li>■ 0명</li> </ul>	20 15 10 5
	<b>부부합산 연소득 (20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li> <li>■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초과 ~ 6,200만원 이하</li> <li>■ 부부합산 연소득 6,2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li> <li>■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li> </ul>	20 15 10 5
<b>정성 평가 (30점)</b>	<b>필요성 (15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받고자 하는 주택의 노후·파손 상태 등을 고려한 필요성</li> <li>- 주택 노후도·파손, 신청인의 사업 추진 의지 등</li> </ul>	상15 중10 하 5
	<b>효과성 (15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에(공사비 등) 따른 주거환경 개선정도에 대한 효과성</li> <li>- 추진일정, 공사비, 공사범위, 규모, 적합성 등</li> </ul>	상15 중10 하 5
<b>가점 (부서평가)</b>	■ 「장애인복지법」 법령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
	■ 「장애인복지법」 법령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b>필 수 확 인 사 항</b>	가. 법령 및 조례와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유무 및 벌금형 선고 여부 등	-
	다. 신청한 자부담액 부담능력 유무	-

※ 동점 시 자녀수 > 준공연수 > 부부합산 연소득 순으로 선정

[별지 제1호서식]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①성명				②주소			
	③생년월일				④연락처			
	⑤부부합산 연소득	원			⑥자녀수			
	⑦체납여부	국세 체납유무 ( ) 지방세 체납유무 ( ) 세외수입 체납유무 ( )						
주택 현황	①소재지				②사용승인일자			
	③주택종류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④주택규모	<input type="checkbox"/>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층 수		층
	⑤전입일	년 월 일		⑥주택매입금액				원
	⑦체납여부	국세 체납유무 ( ) 지방세 체납유무 ( ) 세외수입 체납유무 ( )						
시공 업체	①시공사				②소재지			
	③업체명				④연락처			
공사 항목	구분	내용					공사비(부가세포함)	
	건물외부						천원	
	건물내부						천원	
	계						천원	
착수에정일	년 월 일			완료예정일	년 월 일			
비용	보조금 ( 천원) + 자부담 ( 천원) = 천원(예상금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1부 (별지 제3호 서식) 3. 주택매입계약서 4. 견적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5. 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6. 보조금 통장사본 (자부담 확인) 7.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8.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1부 9.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부모기준 각 1부) 1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공고문 참고) 11. 연소득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문 참고) 12.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납입 증명서 각1부 13. 사업신청자 국세/지방세납입 증명서 1부 14. 장애인증명서 (해당 시)
공무원 확인서류	1. 건축물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공사명 : 00주택(000-00번지) 리모델링 공사 (예시)

2. 건축물 현황

주소(주택명)	가구(세대)수	비 고

3. 보조종류 : 민간자본사업보조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노후된 내부시설 수리 및 개선(예시)
- 노후된 샷시 교체를 통해 단열개선(예시)

5. 사업(공사)개요

- 총사업비 :

총사업비	보조금(최대 500만원)	자부담(보조금의 50% 이상)

- 사업량 : 마루공사, 도배공사, 목공사, 전기공사, 시트공사 외(예시)

- 공사기간 :

6. 일정별 추진 계획

일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2024. 07. 02.(예시)	샷시 교체(예시)	앞 베란다 샷시 교체(예시)
2024. 07. 04.(예시)	가구 공사(예시)	안방 가구 마감(예시)

7. 기대효과

- 노후된 내부시설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예시)



□ 주택 외부 사진 (전경)

주택전면사진	주택측면사진
사진첨부	사진첨부

□ 리모델링 공사 위치

평면도(리모델링 위치 표시)	
<p>도면첨부(리모델링 위치 표시)</p>	
<위치설명>	<위치설명>
<p>사진첨부 (추가가능)</p>	<p>사진첨부 (추가가능)</p>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2024년 김해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 2.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 또는 가족관계 확인
국민기초수급대상	자격조사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주택조사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 및 사회보장 지원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 부동산 보유현황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 사업 및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리모델링관련 사업의 중복 및 사업내용 확인을 위하여 3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약서

■ 본인은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발생할 시 지원 대상 선정 취소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주택소재지 :	
건물소유주	연락처 : - -

- 지원조건
  - 건축 관계법령 및 지침 준수
  - 현장점검 시 협조(사전, 준공, 사후 현장점검 등), 공사과정 기록, 홍보 등 적극 협조
  - 비용지원 이후 1년 이내 주택 매각 시 지원비용 전액 환수
- 시공사 선정 및 계약
  - 공사 시공업체는 신청자(소유자)가 직접 선정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여야 함
  - 김해시에서 업체 추천하지 않음.
  - 계약 체결 시 '리모델링 지원사업 표준 공사 계약서(별첨1)'를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선정심의를 통해 신청한 보조금에서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신청서 기재사항누락, 서류미비 등으로 보완 요청하였음에도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심의 대상에서 제외
- 공사 시행
  - 공사는 착공서류 제출 이후 6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일이 경과하는 경우 자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지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시와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공사 지연에 따른 보조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김해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함
- 자부담 및 보조금 지급
  - 신청서류 제출 시 보조금 전용 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사본 첨부
  - 시에서는 준공 검사 및 자부담금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함
- 보조금은 지원 결정된 공사 범위 및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
  - 보조금 지원결정 된 공사에 대해서만 공사완료 시 지급 결정된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공사완료 이후 일시에 지급하며, 분할지급 및 선금지급 불가
  - 보조금 지원결정 이후 공사 범위가 축소된 경우, 축소된 공사금액 대비하여 보조금 지원함
  - 보조금 지원결정 이후 공사 범위가 확대된 경우, 추가된 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불가
- 보조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하자보수
  - 건축주와 리모델링 업체 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과정에서 충분히 확인
  - 공사 이후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업체는 계약 조건에 의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하자보수에 관하여 김해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 아래 사항의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 대상자(건물주)는 즉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김해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함.
  - 지원금을 집수리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위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이 초과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상기 본인은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신청에 있어 상기 지원조건 및 지원 결정취소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위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착공신고서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체납여부	국세 체납유무 ( ) 지방세 체납유무 ( ) 세외수입 체납유무 ( )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체납여부	국세 체납유무 ( ) 지방세 체납유무 ( ) 세외수입 체납유무 ( )		
계약내용	총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천원	보조금액	천원
			자부담금액	천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기타			

상기 본인은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착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시공사(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li>공사계약서 사본 1부.</li><li>최종 견적서,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각 1부.</li><li>(해당시)전문건설업 증빙서류 (전문건설업 등록증, 면허증, 수첩 사본)</li><li>통장사본 1부</li><li>청렴이행 서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li></ol>
------	--

[별지 제7호 서식]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준공 신고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소유자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체납여부	국세 체납유무 ( ) 지방세 체납유무 ( ) 세외수입 체납유무 ( )		
공사 업체	주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체납여부	국세 체납유무 ( ) 지방세 체납유무 ( ) 세외수입 체납유무 ( )		
건축물 현황 및 개보수 내용	주택 소재지			
	공사 내용	공사 항목 구분		
		건물 외부 (보수 등)		
	건물 내부 (보수 등)			
	변동 사항			
	착공일		준공일	
총공사 금액	천원	보조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상기 본인은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준공 신고 및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시공사(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기한 내에 미제출 시 공사 포기로 간주함

제출서류	1.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2.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사 전·후 사진(별지 9호 서식) 1부. 3.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4. 보조금 실적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5.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6. 공사 내역서 1부. 7. 세금계산서 사본 등 공사비 지출증빙서류 8. 통장 사본 1부. 9.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1부. 10. 폐기물처리 확인서(해당시에만 제출) 11.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납입 증명서 각1부 12. 사업신청자 국세/지방세납입 증명서 1부
------	--

[별지 제8호 서식]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청구금액 : 금 원 (일금 정)

입금계좌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예금주명 (업체명)	비고

위 금액을 리모델링 지원사업 보조금액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인)

시공자 (인)

※ 법인은 업체명 기입, 도장날인, 서명금지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사 전·후 사진

건물 외관 사진(창호교체 등 외부 공사 있을 경우)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 전	공사 후

공사 부위별 사진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 전	공사 후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 전	공사 후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 전	공사 후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 전	공사 후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 전	공사 후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김해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김해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김해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시공자(대표)

(서명 또는 인)

## 실 적 보 고 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김해시장이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제출자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업명			
사업기간	. . . . ~ . . . . .		
교부 결정일			
사업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 추진방법	<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 <input type="checkbox"/>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input type="checkbox"/>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input type="checkbox"/>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 란에 작성합니다.

###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	사후관리 기간	취득/말소 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분	예산액 (교부조건)	%	집행액	%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비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총 이자발생액:  지방보조금 이자 발생액:	
자부담							

### 2. 내역별·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출내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b>총계</b>						
보 조 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 부 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사업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뒤쪽)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부내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 사업변경내역서

## ○ 소요사업비 내역

- ▶ 총사업비 :                    원( 100 %)
- ▶ 보조금 :                    원(        %)
- ▶ 자체부담 :                 원(        %)
- ▶ 산출내역 (※산출기초 단위는 원, 기타 단위는 원)

(단위 : 원)

예산과목		당초 신청액				변경 신청액				변경 사유
지출항목	부기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 산출기초 작성법 : 단가(원) × 회(명, 부, 개 등)

※ 정산검사시 계획대로 집행했는지 여부 확인

## ○ 기타사항 변경내역

- ▶ 사업기간 : (유, 무) -        .   .   .   ⇒        .   .   .

※ 산출내역은 항목별로 정확히, 세부적으로 작성 / 사업기간 변동사항 기재

※ 당초 심의결과 자부담 비율을 임의 조정할 수 없음 (정산시 자부담 포함 자료 제출)

[별첨 1]

##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표준 공사 계약서

1. 공 사 명:
2. 대지위치:
3. 공사기간: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4. 도급금액: 일금 원정 (천원단위 절사)  
공 급 가 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액: 일금 원정
5. 선 금(자부담금): 일금 원정
6. 잔 금(보조금): 일금 원정
7. 잔금의 시기 및 방법: 준공검사 후 소유자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후 소유자가 대금지급
8. 하자담보책임기간: 모든 공사항목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준공 이후 시공자는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건축주에게 증권원본을 제공하도록 한다.
9. 하자보수보증금율: 도급금액의 5%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함
- 10.기타사항: 소유자와 시공자는 이 계약서 및 공사견적서, 리모델링 지원사업 보조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기재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건축 공사 표준계약서」 내용을 준용한다. 또한 건축주와 시공자는 공사계약의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 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인)
시 공 자	
상 호	
주 소	
성 명	(인)

[별첨 2]

## 하자보증이행각서

1. 공 사 명:
2. 공사위치:
3. 공사기간:

착 공  
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4. 공 사 금 액: 금
5. 하자보증금액: 금
6. 하자보증기간: 금
7. 하자보증내용:

원(부가세포함)  
원  
원

상기 내용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증 기간동안 하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  
치 않을 경우       에게 하자보증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 :                   (인)

귀하

※ 보조금교부 결정 전 착공 한 경우 착공신고서를 대체하여 제출

[별지 제15호 서식]

##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체납여부	국세 체납유무 ( ) 지방세 체납유무 ( ) 세외수입 체납유무 ( )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체납여부	국세 체납유무 ( ) 지방세 체납유무 ( ) 세외수입 체납유무 ( )		
계약내용	총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천원	보조금액	천원
			자부담금액	천원
	착공일		준공(예정)일	
	기타			

보조금교부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시 지원 불가)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선수행 한 리모델링 공사건에 대해 보조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시공사(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제출서류

- 공사계약서 사본 1부.
- 최종 견적서, 계약업체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해당시)전문건설업 증빙서류 (전문건설업 등록증, 면허증, 수첩 사본)
- 통장사본 1부
- 청렴이행 서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